

11. 재산분할·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재산분할)

피고는 원고에게 ○○시 ○○구 ○○동 12-3 대 150㎡에 대한 1/2지분에 관하여 2004. 5. 16.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상속재산분할)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대한 각 4분지 1지분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한 사용·수익·처분권한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폐치·분합에 의한 재산승계)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95. 3. 1.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에 의한 재산승계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참조판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승계되는 재산의 범위

지방자치법 제5조 제1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시 승계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폐치·분합 등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된 지역 내의 모든 재산이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과는 관계없이 보유하고 있는 잠종재산이라도 승계의 대상이 된다.(부산고법 1998.1.15. 선고 97나8991 판결)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에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협의분할)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별지2 목록 기재 각 지분비율에 관하여 1999. 10. 20.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